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9일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우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9일

발 의 자 :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하유정, 이의영

## 1. 제안 이유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명 개정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 ‘충청북도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
- 장 제목 신설(제1장 총칙, 제2장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 도내 노사민정간 상호 책무 신설(안 제2조)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신설(안 제15조)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신설(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8.11.21.~2018.12.10.(20일간, 특이의견 없음)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북도내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충청북도(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노사민정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의

제별·업종별 분과·특별위원회(이하 “하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협의체의 구성·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부서

2.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업무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충청북도,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청북도지역본부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충청북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단체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2.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와 제16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노사민정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노사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제고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활성화

## 2. 비용 발생 요인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월세, 관리비

## 3. 관련조문

- 제1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월세, 관리비 경비
- 나. 추계의 전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월세, 관리비
-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연 93,12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세 출	465,600	93,120	93,120	93,120	93,120	93,120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용	465,600	93,120	93,120	93,120	93,120	93,120

※ 연간 소요비용 : 93,120천원 정도(월세, 관리비)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이 기 영(220-3350)

# 관계 법령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